

# 소매물가조사지침

197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차 례

1. 불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 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절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3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4
가. 소매가격표	14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	14
다. 방세 조사표 .....	15
라. 납입금 확인서 .....	16
10. 조사표류 발송 .....	17
가. 조사표 발송 .....	17
나. 질의 조회 응신 .....	17
11. 명부 작성 .....	17
가. 가격 조사부 .....	17
나. 대상처 명부 .....	18
부록 1. 품목 및 품질규격 .....	19
부록 2.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	41

##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추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 (=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 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 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수준의 변동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란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게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어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계소비지출 계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재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편 서어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가격은 유통단계를 중심으로한 개념이고 소비자 가격은 가계소비지출을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포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어비스 요금인 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훗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계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위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

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불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 2. 조사 품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38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시별 조사 품목 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시	338	123	54	7	54	100
서울	331	120	54	6	54	97
부산	322	118	45	7	54	98
대구	319	118	45	6	54	96
인천	318	117	45	6	53	97
대전	318	117	46	6	54	95
광주	315	115	44	6	54	96
전주	317	116	46	6	54	95
춘천	309	115	42	6	53	93
청주	307	110	45	6	54	92
기 타 시	321	118	47	6	54	96

### 3. 품질 규격 및 단위

#### 가. 품질 규격

1) 가격 계열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함으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량이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 나. 품질 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적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2) 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1개시에서 조사한다.

###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 다. 대상처 선정기준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점포를 선정한다.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가) 도매점포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다) 통신 판매점

라) 중고품 판매점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바) 중앙에서 지정 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구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된 경우
-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 인에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5. 조사 시 점

###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26 품목)

###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휴사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 (추석, 성탄절등) 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사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예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 6. 조사 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 7. 조사 요령

소매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메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 8. 품질 품목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처리 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cm) 다른 규격의 갈치 (90cm) 만 출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귀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가격이다.

## 9. 조사표류 기입요령

### 가. 소매 가격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략일 경우에단 차액앞에 △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pm$  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del>2</del>	<del>5</del>

4)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5)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3) 방화와 의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 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상영일자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 다. 방세 조사표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며 방이 돌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과의 전기가격의 착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전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예 전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라. 납입금 확인서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하며 등급의 총화가 100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란의 A는 전액면제자 B는 전액납부자이므로 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

(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조사표류 발송

###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조사원 유고시에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질의조회 응신

1)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11. 명부작성

### 가. 가격조사부 (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

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장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대상처 명부

#####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함으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록 1

품 목 및 품 질 규 격

##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101	쌀 (일반미)	정미	8 kg (10 l)
10102	쌀 (방출미)	정부미 또는 농협방출미	8 kg (10 l)
10103	참 쌀	정미	8 kg (10 l)
10104	보리쌀(정맥)	쌀보리	7.65kg (10 l)
10105	보리쌀(압맥)	비닐봉지포장 3 kg들이 (농협제품)	1 포
10106	콩	백태	7.5 kg (10 l)
10107	팥	적두	8.33kg (10 l)
10108	녹 두	흑갈색	8.33kg (10 l)
10109	좁 쌀	차조	7.89kg (10 l)
10110	밀 가 루	중력분 2등급,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111	수 수 쌀	차수수	10 l
10112	밀	참밀	7.5 kg (10 l)
10201	쇠 고 기	정육	600 g
10202	돼 지 고 기	정육	600 g
10203	닭 고 기	화이트종 (우)잡아서 털뽑은것 1마리정도	1 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 cm정도(우)	1 마리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 cm정도	1 마리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10303	생명태	생선길이 45㎝정도(우)	1마리
10304	고등어	생선길이 35㎝정도	1마리
10305	꽂치	생선길이 30㎝정도	10마리
10306	가자미	생선길이 30㎝정도, 폭 15㎝정도	1마리
10307	전갱이	생선길이 20㎝정도	1마리
10308	병어	생선길이 25㎝정도	1마리
10309	물오징어	생선몸길이 25㎝정도	10마리
10310	굴	싱싱한것	375g
10401	굴비	길이 30㎝정도 10마리	1두름
10402	마른멸치	황백색길이 5㎝정도	375g
10403	마른오징어	몸길이 25㎝정도(주문진산)	20마리
10404	복어	황태길이 40㎝정도	1마리
10405	새우젓	추젓(고봉)	1ℓ
10406	멸치젓	완전히 삭은것	1ℓ
10501	달걀	흰색, 상란 개당 50g정도	10개
10502	분유	서울분유 450g들이	1통
10503	연유	서울연유 397g들이	1통
10504	목장우유	각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들이 (고정배달)	1병
10601	무우	재배중, 잎없는것, 3개정도	3.75k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602	배 추	호배추	3.75 kg
10603	양 배 추	겉접질 벗긴것	3.75 kg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6 cm정도	3.75 kg
10605	양 파	3 개정도	375 g
10606	시 금 치	신선한것	375 g
10607	콩 나 물	길이 5 cm정도	375 g
10608	상 치	잎상치	375 g
10609	당 근	2 개정도	375 g
10610	오 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 cm정도 (개당 120 g정도)	10 개
10611	호 박	애호박 600 g정도	1 개
10612	가 지	길이 25 cm정도	10 개
10613	도 마 도	2 개정도	375 g
10614	감 자	흰색 25 개정도	3.75 kg
10615	고 구 마	15 개정도	3.75 kg
10701	김	개량김, 점정색	10 장
10702	미 역	대장각 ( 180cm X 190cm정도 ) ( 상표지정 )	1 장
10703	다 시 마	달린것	375 g
10801	고 추	재래종, 완전히 마른것	600 g
10802	고 추 가 루	중가루, ( 고품 )	0.2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803	마 늘	마른것, 직경 5 cm정도	1 접
10804	소금 (천일염)	국산, 1등급 (고봉)	2 g
10805	" (제제염)	국산, 고운소금 (고봉)	2 g
10806	참 깨	흰 색	1 g
10807	참 기 림	공장제품	0.18g
10808	채 종 유	유채유	0.18g
10809	콩 기 림	해포 (동방유량), 프라스틱병 900me 들이 (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림	공장제품	0.18g
10811	설 탕	백설탕 (제일제당), 비닐포장 500 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2	구루탄(산소다)	신선로포 (미원), 비닐포장 100 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3	간 장	샘포 (진간장), 900me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포, 비닐포장 500 g 들이	1 포
10815	생 강	10 개정도	375 g
10816	식 초	화명식초, 유리병 100me 들이	1 병
10817	후 추 가 루	캔 포장 100 g 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1	두 부	200 g정도 (공장제품)	1 모
10902	라 면	삼양최고기라면, 120 g 들이	1 봉
10903	국 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당 면	순녹말	375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905	단 무 지	왜무우	375 g
10906	마 야 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이카린) 225 g들이	1 개
10907	소 시 지	마미소세이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00 g들이	1 개
10908	통조림 (생선)	꽂치 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9	" (과실)	복숭아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1001	사 과 (홍워)	개 당 180 g정도	10 개
11002	" (국광)	개 당 200 g정도	10 개
11003	배	개 당 450 g정도	10 개
11004	복 승 아	백도, 개 당 250 g정도	10 개
11005	포 도	흑갈색	375 g
11006	감	홍시, 개 당 150 g정도	10 개
11007	꽃 감	꽃이당 10개	1 꽃이
11008	밤	굵은것 (고봉)	1 개
11009	밀 감	제주산, 개 당 100 g정도	1 개
11010	바 나 나	수입품	375 g
11011	참 의	은천참의 (나이론참의) 개 당 600 g정도	10 개
11012	수 박	개 당 5kg정도	1 개
11013	딸 기	개 당중	375 g
11014	빵 (크립빵)	삼립빵, 비닐포장품, 40 g들이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1102	빵 ( 식 빵 )	삼립식빵 900 g	1 개
11103	빵 ( 카스텔라 )	삼립표, 비닐포장품 50 g들이	1 개
11104	건 빵	100 g들이 ( 상표지정 )	1 봉
11105	드 룩 스	해태왕드루프스 80 g들이	1 봉
11106	비 스 켓	마미소프트비스켓 ( 오리온표 ) 5개 들어 ( 28 g × 5 )	1 봉
11107	셴 베이	보통품	375 g
11108	카 라 멜	뉴소프트카라멜 ( 해태 과자 ) 32 g들이	1 갑
11109	초 콜 렛	해태블랙초콜릿 ( 28 g )	1 개
11110	검	셀렘민트 ( 해태계과 ), 5개 들어 ( 12 g )	1 갑
11111	땅 콩	볶은것, 속껍질 있는것 ( 교봉 )	1 g
11112	아 이 스크림	해태매도골드콘 100cc	1 개
11113	아 이 스킨디	빙고 아이스바, 60cc ( 상표지정 )	1 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190 ml들이	1 병
11202	사 이 다	칠성사이다, 340 ml들이	1 병
11203	쥬 스	오란. 씨 ( 동아제약 ) 190 ml들이	1 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 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 잔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11206	릴코	다방 판매품	1잔
11301	백주	오비 640mg들이	1병
11302	소주	진로 25도 ~ 30도, 360mg들이	1병
11303	청주	백화수복, 1,800mg들이	1병
11304	약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5	탁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6	포도주	진로포도주, 360mg들이	1병
11401	곰탕	1급대중식당	1그릇
11402	빙면	1급대중식당	1그릇
11403	짜장면	1급중화요리점	1그릇
11404	우동	1급중화요리점	1그릇
11405	초밥	1급화식집, 김초밥	1인분
11406	비빔밥	1급대중식당	1그릇
20101	방세 (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기외집, 부엌있는 온돌방 1개	※
20102	" (월세)	"	1개월
20201	도배지	벽지, 중질지 3색도, 두루마리 54cm X 550cm	1필
20202	창호지	전주산, 기계지, 포백 (20장)	1권
20203	장판지 (비닐)	라키비나루제품, 8자방 1칸용, 0.8mm 124cm X 485cm	1장
20204	" (종이)	황색 4매지, 110cm X 95cm 정도, (전주산)	1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205	시멘트	일반용, 40kg들이 (상표지정)	1포
20206	판유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mm 1평	918cm
20207	페인트	제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광, 외부용 1급품 4ℓ들이	1통
20208	합석	별표 (일신산업) #31 (두께 0.23mm) 90.9cm × 181.8cm 평판	1장
20209	스레이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mm, 72.72cm × 181.8cm, 석면, 소골 (11.5) (KS 표시품)	1장
20301	수저 (은)	성인용 70%은, 무게 75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벌
20302	" (스테인레스)	성인용, 주물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벌
20303	스테인레스주발	성인남차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mm (상표지정)	1벌
20304	양은술	직경 30cm, 뚜껑제외 (상표지정)	1개
20305	남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cm (상표지정)	1개
20306	접시	직경 20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개
20307	접	유리제품 1홉 7작들이, 보통품 6개 (상표지정)	1조
20308	주전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ℓ들이 (KS 표시품)	1개
20309	후라이팬	스테인레스제품, 직경 25cm 정도	1개
20310	코오피셋트	행남사, 홍장미무늬, 유색 6벌, 1등품	1조
20311	버킷	플라스틱제품 15ℓ들이 뚜껑포함 (상표지정)	1개
20312	항아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것, 뚜껑제외 40ℓ들이	1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313	세 슷 대 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 cm (상표지정)	1 개
20314	시계 (탁상용)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원형)	1 개
20315	" (벽시계)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4PC-821 형	1 개
20316	전 기 다 리 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V-150W -250W -400W -500W (상표지정)	1 대
20317	전 구 (백열등)	투닝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 개
20318	" (형광등)	번개표, 주광색, 갖제외 20W, 일반조명용 (KS표시품)	1 개
20319	책 상	철강제품, 윗설합 1개, 편측설합 3개 (910 mm X 610 mm X 760 mm) (상표지정)	1 개
20320	자 전 거	3000 리호, 표준형 (26 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 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금성사제품, TV 83 B, 48.2 cm (19 인치) 트랜지스터 부착	1 대
20402	선 품 기	금성사제품, DH3513 H형, 35.56 cm (14 인치)	1 대
20403	냉 장 고	금성사제품, GR-1640 형, 용량 160 l (540 mm X 600 mm X 1,240 mm)	1 대
20404	라 디 오	금성사제품, RM 800, 휴대용	1 대
20405	전 축	별표 TR-4000, 외장은 B형	1 대
20406	녹 음 기	소니, 모델 TC-110 A (외국산), 휴대용	1 대
20407	믹 서	금성사제품, M-802 형	1 대
20408	피 아 노	수도피아노, 셉멜 5-5 A (건반 88 개)	1 대
20409	캐 비 넬	한국제품, 철강제양복장, 양문, 안설합 2개 (페인트도장) 121 cm X 57.6 cm X 181.8 cm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410	재 봉 틀	드레스미싱, DB형, 특격실(무평태이블)	1 대
20411	석 유 난 로	금성사제품, SR 5060	1 대
20412	석 유 곤 로	금성사제품, KC 1510	1 대
20501	수도료(기본)	가정용, 전용전, 월간기본요금포함 10㎡	10 ㎡
20502	" (초과)	가정용, 전용전, 16㎡초과분(서울,부산) 기타시(10㎡)	16 ㎡
20601	청 소 료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개월
20602	청 소 료 (인분계거비)	일반가정, 18ℓ들이	1 통
20603	숙박료(호텔)	을류, 독방, 침대, 1인1박, 독탕부설 식사제외	1 일
20604	" (여관)	1류, 1인1박, 독방, 한식온돌방 식 사제외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6	목 수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7	미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8	칠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9	잡 부 임	급식제외	1 일
30101	전 기 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30201	연 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배달 료제외), (상표지정)	10개
30202	가 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배달료 와 통값 제외)	10 kg
30203	숯	참나무 숯, 흑탄	100 ㉔
30301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 ℓ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30302	성 남	가정용대형(덕용), 8각형 450개 피들이 (상표지정)	1 통
30303	양 초	6개들이, 감당 300 8정도 (상표지정)	1 갑
40101	마춤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울 50%, 폴리에스터 50%), 인견반침	1 벌
40102	마춤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해링본) 52S/2 인견반침	1 벌
40103	마춤속니복 (여름용)	경남모직, 실크스카치가드, 팔없는 원피 스, 나이론다후다반침	1 벌
40104	마춤속니복 (겨울용)	경남모직, 미라노저지(울 30%, 카시밀 론 70%), 루피스, 나이론다후다반침	1 벌
40105	마춤코트	제일모직, 베니슨 2 중직, 남자용 울 100 %, 인조밍크반침	1 벌
40106	마춤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홈빠이루 8S/2, 기모, 인견반침	1 벌
40107	한 복	성인여자춘추용, 앙고라, 상하 각각 3 겹(통시아에 망사심)기성복	1 벌
40108	학생복 (여름용)	남자중학생용, 상의는 TC(68%포리에스 터 35%면)청색; 하의는 TR(50%포리에스 터 50%레이온), 기성복 4호	1 벌
40109	학생복 (겨울용)	남자중학생용, TR 100% 레이온반침, 기성복 4호, 후색	1 벌
40110	양 동 복	지지미,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 (8~9세용)	1 벌
40111	잠 바	스카이론,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안반침기성복	1 매
40112	와이셔어츠 (긴 팔)	사자표, 시대론 PPP (폴리에스터 65%, 면 35%) 기성복	1 매
40113	와이셔어츠 (반 팔)	사자표, 시대론 LP (폴리에스터 65%, 면 35%) 기성복	1 매
40114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 매
40115	내 의(면)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하 25S, 무색 (상표지정)	1 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116	내 의 ( 화학사 )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합무색, 플러에스터 100%. (상표지정)	1 벌
40117	런 닐 셔 어 츠	남자성인용, 반팔, 38S, 흰색 (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록	면 16S × 16S, 폭 88.9cm, 표백안된것 (1마) (상표지정)	91.4cm
40202	포 플 렐	면 30S × 32폭 91.4cm, 날염 (상표지정)	91.4cm
40203	용	면 100% 경사 20S, 위사 10S, 폭 36인치 양면기모, 백색 (1마) (상표지정)	91.4cm
40204	나 이 론 태 피 터	나이론 100%, 70 테니엘, 폭 94cm, 유색	91.4cm
40205	실 ( 재봉사 )	면 100%, 30S/3, 길이 4,5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실 ( 화학사 )	한일합섬, 아크릴 100%, 20S/2, 편물용, 유색	453.6g
40207	솜	면, 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208	이 불	지지미원단, 카시미론솜 6편 (2kg정도) 2인용 (상표지정)	1 장
40301	마춤구두(남자용)	신사용, 복수혁, 나이론창, 나이론굽, 검은색	1 켤레
40302	" (여자용)	숙녀용, 합성피혁 (크라리노칠피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1 켤레
40303	고무신 (남자용)	말포, 흰색, 260mm, 9000백 남대 (KS표시품)	1 켤레
40304	" (여자용)	말포, 흰색, 230mm, 9000백 여대 ( " )	1 켤레
40305	운 동 화	말포,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mm	1 켤레
40306	비 신	말포,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고무제 품 260mm	1 켤레
40401	양말(남자용)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면 8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402	양말 (여자용)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40403	" (아동용)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단색 (8~9세용) (상표지정)	1 켤레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 나이론 100%	1 켤레
40405	장 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 매
40406	빅 타 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100%, 최신형	1 매
40407	마 플 러	남자성인용, 본견, 40S 단사 (110cm × 30cm), 중품	1 개
40408	모 자	중고교생용, 울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 안발침, PVC웹	1 개
40409	가 방	남자중학생용, 100% PVC, 면접착 (스폰지식)	1 개
40410	모 포	한일합섬제품, 한일메리노일반용 (2.1m × 1.4m) 위사는 카시미론 100%, 경사는 면 100%	1 매
40411	수 건	타올, 면 23S, 80cm × 32cm 정도, 유색 (상표지정)	1 매
40412	우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검은색	1 개
40413	양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유색	1 개
40414	손 북 시 계	오리엔트 19식, 남자용, 카렌다형, 빙수수동태엽,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5	금 반 지	순금 (99%), 3.75g, 무늬단조 (수공임포함)	1 개
40416	핸 드 백	비닐제품, 미혼여성용,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 (상표지정)	1 개
40417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테 (세루로이드 6mm), 국산알 (슈피겔), 갈색	1 개
40501	세 탁 비 (양 복)	신사복상. 하, 드라이클리닝 (다림질 포함)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502	세탁비 (와이셔어즈)	대드론제품 (다림질포함)	1 회
40503	재봉료	부인용, 춘추용한복 (화학사웃감, 3겹) 수공업.	1 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정도	1 회
40505	신수선료	남자구두 1 켤레, 뒗창수선료 (재료값 제외)	1 회
40506	구두닦이	남자용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양제	비타민 (유유산업), 100정들이	1 병
50102	잠기약	노바킹당의정 (동광약품), 10정들이	1 병
50103	소화제	부채표활명수 (동화약품), 60ml들이	1 병
50104	항생제	페트라싸이클린 (중근당제약) 250mg	10 켤술
50105	해독강장제	박카스 D (동야제약), 100cc들이	1 병
50106	구충제	비페라 (중근당제약) 12정들이	1 병
50107	의상약	마큐롬액, 15cc들이	1 병
50108	진찰료	중합병원, 보통초진료	1 회
50109	입원료	중합병원, 일반환자 2등 (식사포함, 약대제외)	1 일
50110	분만료	중합병원, 2등, 2박3일입원, 경산, 정상분만 (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스-레이 촬영료	중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촬영 (14인치×14인치)	1 회
50201	비누 (화장)	코티벌꿀비누 8,000번 (동산유지)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202	비 누 (세탁)	일반가정용, 2호350g, (상표지정)	1 개
50203	" (가루)	럭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치약, 100g들이 (중형)	1 개
50205	칫 솔	럭키 뉴 777, 성인용 (케이스포함)	1 개
50206	화 장 크 림	모노바바니싱크림, 60g들이	1 갑
50207	화 장 분	모노바 밀크파운데이션, 35g들이	1 갑
50208	화 장 수	모노바이스트린센트로온 120ml들이	1 병
50209	포 마 드	오스카향수포마드, 60g들이	1 갑
50210	화 장 지	장미포 1번 (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 충 제	에프킬러 S 에어로졸 (삼성제약), 수압 분무식 300ml들이	1 통
50212	이 용 료	성인 (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3	미용료 (교미)	성인 여자 (가발·카트료제외), 중류	1 회
50214	" (파마)	성인 여자, 보통파마 (체리파마약), 중류	1 회
50215	목욕료 (성인)	남자, 일반대중탕	1 회
50216	" (아동)	일반대중탕 (7세이하)	1 회
50301	버스로 (좌석)	성인, 시내 1구간	1 회
50302	" (일반)	성인, 시내 1구간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303	버스로 (고속)	서울-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4	택시로 (기본)	시내, 기본요금 (2km)	1 회
50305	" (초과)	2km 초과요금	1 회
50306	기차료 (완행)	대인, 40km	1 회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40km	1 회
50308	항공료	대한항공, 서울-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9	선박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등실, 20해리	1 회
50401	전화료 (기본)	가정용 1대, 시내통화료	1개월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회	200 회
50403	우편료	국내, 필서봉서, 20g 이내	1 통
50404	전보료	시외, 보통, 10자 이내	1 회
50405	소포료	국내, 6kg까지	1 개
50501	교과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생, 자연	4 권
50502	교과서 (중학교)	영어 (중1, 미들스쿨) 수학 (중1, 현대중학, 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3	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고1 하이스쿨), 수학 (고1, 현대공통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4	국민학교 육성회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분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505	남 입 금 (공중)	2학년생	1분기
50506	남 입 금 (사중)	2학년생	1분기
50507	남 입 금 (공고)	2학년생	1분기
50508	남 입 금 (사고)	2학년생	1분기
50509	남 입 금 (국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학기
50510	남 입 금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학기
50511	남 입 금 (전문)	4학년생, 기계과	1학기
50512	유치원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개월
50513	참고서	엡센스영한사전(민중서관), 3×6판, 인도지, 비닐포지, 1,680페이지	1권
50514	학원비(입시)	대학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분 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개월
50515	학원비 (자동차)	지정자동차학원, 본과영업반8주과정 수강료(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제외)	1개월
50516	학원비 (양재)	재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입학금제외)	1개월
50517	도서관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회
50518	도서관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일
50601	볼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표시품	1개
50602	인필	동아인필 HB1000, 향나무(지우계부착), KS표시품	1다스
50603	만년필	파일롯트 E형(W400)	1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604	노 트 ( 대 )	모조지 16 매 ( 표지포함 ), 18.6 cm × 26.5 cm ( 상표지정 )	1 권
50605	" ( 소 )	갱지 14 매 ( 표지포함 ), 14.5 cm × 20.5 cm ( 상표지정 )	1 권
50606	도 화 지	마나라지 ( 45.4 kg ) 1면사용, 수채화용, 8 절지	1 장
50607	시 험 지	갱지 16 절지	20 매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풀봉투, 흰색	10 장
50609	크 레 파 스	모나미 왕자표, 굵은파스 ( 6 cm 정도 ) 22 색들이	1 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 들이	1 병
50701	신 문구독 료	동아일보, 가정배달	1 개 월
50702	주 간 지	주간한국, 32면	1 부
50703	월 간 지 ( 여성지 )	주부생활 ( 당월분 )	1 권
50704	월 간 지 ( 대중지 )	아리랑 ( 당월분 )	1 권
50705	월 간 지 ( 아동지 )	소년중앙 ( 당월분 )	1 권
50706	월 간 지 ( 종합지 )	신동아 ( 당월분 )	1 권
50707	월 간 지 ( 문예지 )	현대문학 ( 당월분 )	1 권
50708	영화 관람 료 ( 방 화 )	충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포함 ( 각종구호금제외 )	1 회
50709	영화 관람 료 ( 외 화 )	"	1 회
50710	텔레비전 료 시청 료	1 대	1 개 월
50711	고 궁 입장 료	고 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색 3~4대 (상류사진판)	1 조
50713	필 림	코닥, 폭 35mm, 20장촬영용, 국내재본	1 통
50714	장 난 감	유색, 고무공, 직경 18cm정도	1 개
50715	삼 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장식	1 대
50716	운 동 기 구	축구볼, 보급용 (중양구), 소가죽 32피	1 개
50717	레 코 트 판	IP형, 지름 27cm, 스트레오, 국내일류 가수신곡최신취입	1 장
50801	담 배(한 강)	12개들이 (필터)	1 갑
50802	"(창 자)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3	"(신 탄진)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4	"(과 고다)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5	"(남 대문)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6	"(금 관)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7	"(아 리랑)	"	1 갑
50808	"(명 승)	10개들이 (필터)	1 갑
50809	"(새 마을)	20개들이	1 갑
50810	"(금 잔디)	"	1 갑
50901	행 정수 수 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 통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원 발급	1 통
50904	행정수수료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1 통

부록 2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접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kg(1관)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접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곶감~반드시 곶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짚으로 묶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과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 크~묵장 우유되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 주~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 세~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전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형되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동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음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동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수도료~가정용은 1972년부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요금환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예시하면, 인상전에는 기본수량 10㎡에 기본요금 80원, 초과사용량 1㎡당 10원으로 기본료 80원, 초과료 160원(10원

× 16 m<sup>2</sup>)이었으나, 인상후에는 기본료가 10 m<sup>2</sup>에 150 원, 초과사용료는 11~20 m<sup>2</sup>의 경우 1 m<sup>2</sup>당 15 원, 21~30 m<sup>2</sup>의 경우 1 m<sup>2</sup>당 20 원이므로 기본료는 150 원, 초과료는 270 원 (15 원 × 10 m<sup>2</sup> + 20 원 × 6 m<sup>2</sup>) 이 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지방별로 1등급 (월수입, 재산세, 건평등 택일) 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로~올류탄 외국인 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 탄~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복수형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 신~단추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19 석으로서 요일과 날자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형) 수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순도 ( 99 % ) 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복류~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길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

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때 1데

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새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하되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초산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괄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가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정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팀으로 간주하며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중류라 함은 관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며 특수 서어비스(손톱손질, 마사이지 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등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